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590호 | 2019년 6월 13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 www.nars.go.kr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 캠의 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최 미 경*, 최 정 민**

1. 들어가며

2015년 10월 경찰청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찰을 향한 폭언·폭행 등 난동행위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폴리스 캠¹⁾(이하 ‘폴리스 캠’)”의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약 15억원의 예산²⁾을 들여 탈부착이 용이한 100대의 소형 카메라를 제작하고, 해당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현장영상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저장·보관하여 수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영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등을 위하여 폴리스 캠이 제작·보급되었음에도, 최근의 활용도를 보면 실제 초동조치 현장에서의 폴리스 캠 사용실적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서울 역삼동 ‘버닝썬 클럽사건’이나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흥기 난동’ 사건 등은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폴리스 캠이 아닌 현장경찰이 사비를 들여 구입한 바디캠으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이에 이 글에서는 폴리스 캠의 보급 및 사용실적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폴리스 캠 운영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폴리스 캠 운영 실태

(1) 폴리스 캠 운영의 법적 근거

현재 폴리스 캠을 활용하여 현장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수사업무 등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의 수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폴리스 캠을 활용하고 있으며⁴⁾, 경찰청 내부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 캠 시스템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폴리스 캠 사용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 wearable police cam

2) 2015년 미래부 사업비(7.8억원) + 2014년 11월 행정자치부 U-서비스 지원 사업비(8억)

3) 이현주, 「출동현장서 블랙박스 역할..경찰들 ‘나도 바디캠 달라’」, 『한국일보』, 2019.2.12.

4)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2015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2) 폴리스 캠의 보급 현황

폴리스 캠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아 저장·관리하기 위한 영상관리시스템을 경찰청에 구축하고, 100대의 폴리스 캠은 치안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포경찰서, 영등포경찰서 및 강남경찰서 등 3 곳의 경찰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등에 [표 1]과 같이 보급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1] 웨어러블 폴리스 캠의 보급현황

(단위: 개)

카메라	마포 (40)	공덕(4), 기동순찰(6), 망원(3), 상암(3), 서강(5), 연남(3), 용강(5), 월드컵(4), 홍익(7)
	영등포 (40)	기동순찰(4), 당산(2), 대림3(2), 대림(2), 문래(3), 신길(5), 신풍(5), 양평(2), 여의도(6), 영등포역(3), 중앙(6)
	강남 (20)	기동순찰대(20)
영상 시스템	본청	본청

자료: 경찰청, 「폴리스 캠 운용실태 자료」, 내부자료, 2019. 5.10.

(3) 영상 촬영 및 등록 절차

녹화된 현장영상은 촬영한 경찰이 일일이 수동으로 전송·등록하고 있다. 녹화 영상이 실시간 시스템으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경찰이 출동업무 종료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개인 PC에서 매번 수동으로 영상을 전송·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⁵⁾.

[그림 1] 현장경찰 녹화 영상관리 절차



자료: 경찰청, 「폴리스 캠 운영자 매뉴얼」

5)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지급받은 폴리스 캠의 전원을 켜고 → 폴리스 캠의 렌즈를 녹화할 현장으로 고정시킨 후 녹화버튼을 쳐서 영상을 녹화하며 → 부서로 복귀한 뒤 폴리스 캠과 개인 PC를 USB로 연결하고 → 개인 PC에 설치된 영상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녹화된 영상을 서버로 전송하고 영상정보를 수동으로 등록함

(4) 등록 영상 다운로드 주체 등

「웨어러블 폴리스 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르면 현장경찰은 자신이 영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영상을 조회⁶⁾·저장하여 수사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때 편집 등이 불가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없어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영상을 변경·편집할 수 있다. 원본영상이 영상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 그 영상의 진위는 확인할 수 있겠으나, 시스템 저장기간이 최대 3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원본영상마저 폐기되어, 저장 받은 영상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이 미흡하다.

한편, 촬영된 영상은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폐쇄된 장소에서 조회하고 저장하여야 함에도⁷⁾, 사무실 내 개인 PC 등 공개된 위치에서 영상을 열람·저장하고 있다. 영상관리시스템 상 외부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실제 그 영상의 열람·저장은 민간인, 기자 등이 상시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고 있어 우연히 촬영 영상범위에 존재하는 제3자 등의 영상정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5) 폴리스 캠의 활용 실적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폴리스 캠의 입·출고⁸⁾ 실태를 분석하면, 2016년부터 2017년에는 각각 13,781건, 22,046건으로 입출고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10,729건, 2019년(4월 기준)은 1,786건으로, 최근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6)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의 상사와 정보보호담당관 등 2명의 공동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물 접근이 허용됨

7)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8) 현장경찰이 폴리스 캠을 부착하고 현장으로 가는 경우

[표 2] 폴리스 캠의 입출고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48,342	13,781	22,046	10,729	1,786
마포	18,274	5,563	8,745	3,523	443
영등포	29,356	7,565	13,242	7,206	1,343
강남	712	653	59	-	-

자료: 경찰청, 「폴리스 캠 운용실태 자료」, 내부자료, 2019. 5.10.

한편, 최근에 폴리스 캠의 현장 반출이 줄어들어 동 기간 내 영상 등록 현황도 낮아지고 있다. 2016년에는 665건의 영상을 등록하였으나, 2017년에 533건, 2018년에 109건으로 줄어들다가 2019년(4월 기준)에는 등록건수가 아예 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폴리스 캠의 촬영 영상 등록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1,307	665	533	109	-
마포	1,136	513	514	109	-
영등포	157	138	19	-	-
강남	14	14	-	-	-

자료: 경찰청, 「폴리스 캠 운용실태 자료」, 내부자료, 2019. 5.10.

3. 폴리스 캠의 해외 사례

미국은 경찰의 과잉대응을 막기 위해 폴리스 캠을 도입하였으며, 2016년 8월 주요도시 68개 중에서 약 63%에 해당하는 45개 지역에서 도입하였고, 활용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⁹⁾. 독일은 경찰의 자기보호를 목적으로 폴리스 캠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헤센 주에서 폴리스 캠을 시범운영한 이후 다른 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폴리스 캠은 공공장소에서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에서 경찰관이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9) 김학신, 『웨어러블 폴리스캠 실태분석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6.

10) 폴리스 캠 활용에 관해 라인란트-팔츠 주는 「경찰 질서행정법(POG)」 제27조, 함부르크 주는 「경

한편, 2014-2015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 영·미 7개 지역 경찰관 1,8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폴리스 캠 사용이후 민원이 약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한 영상증거를 기록함으로써 경찰과 시민 모두가 성적으로 판단,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사례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 폴리스 캠 관련 쟁점 및 개선사항

(1) 폴리스 캠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폴리스 캠은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을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근접 촬영 등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큰 폴리스 캠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집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¹¹⁾¹²⁾.

이처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사·범죄예방을 위해 폴리스 캠 운영과 관련하여 가급적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¹³⁾ 이를 바탕으로 폴리스 캠 확대·보급 및

찰데이터처리에 관한 법률(HmbPolDVG)」 제8조 제5항제1문, 헤센 주는 「공공안전·질서법(HSO G)」 제14조제6항, 그리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경찰법(PolG)」 제15조c조를 신설함

11) 박원규, 「경찰의 신체부착형 영상촬영기기 사용에 관한 법적연구」, 『입법과정』, 2018.

12) 폴리스 캠 촬영 등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이 내부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 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근거, 폴리스 캠을 운영함에 따라 사후 경찰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김학신, 앞의 글, 2016).

13) 폴리스 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고정형·이동형)의 설치 및 촬영 근거 등을 포함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2017.12.22.)

예산 확보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될 것이다.

(2) 폴리스 캠의 활용 실적 제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 및 국민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폴리스 캠을 시범·운용하고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활용은 저조하다. 이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폴리스 캠이 최초 제작된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시중에서 판매되는 웨어러블 캠보다 사용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며, 특히, 폴리스 캠 배터리 용량부족¹⁴⁾, 작동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 곤란, 그리고 시스템에 영상등록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¹⁵⁾ 등을 이유로 경찰관이 사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경찰직무 집행 시 개인영상에 대한 촬영·저장·이용 등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내부훈령까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훈령의 적용을 받는 폴리스 캠의 사용은 부진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의 오·남용 등이 우려될 수 있는 개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¹⁶⁾

현장의견수렴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폴리스 캠의 장비 업그레이드 등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3) 폴리스 캠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경찰관 본인 자신이 촬영하여 등록한 영상을 편집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장하여 수사 자료

이 발의되어 관련 위원회에 계류 중임

14) 경찰관 인터뷰에서 배터리용량이 30분도 안되어 방전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중요한 범죄 현장이나 문제 발생 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김학신, 앞의 글, 2016.)

15) 영상등록에 장시간이 소요되다보니 현장경찰관이 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많음

16) 이현주, 「출동현장 서 블랙박스 역할..경찰은 나도 보디캠 달라」, 『한국일보』, 2019.2.12.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중립적인 경찰활동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영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편집 제한 또는 전체를 누락 없이 녹화·활용하도록 하는 등 폴리스 캠에 대한 투명성 및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PC로 영상을 다운받는데¹⁷⁾, 해당 영상은 경찰관이 파기¹⁸⁾하지 않으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체계이다. 해당 영상에는 피의자·경찰관 뿐 아니라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경찰관 개인 PC에 장기간 방치될 경우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 향후 폴리스 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미국 등은 경찰에 의한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현장경찰에게 폴리스 캠 착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약 5년간 시범운영만 할 뿐¹⁹⁾ 후속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폴리스 캠 시범운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폴리스 캠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편성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기·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17) 개인PC로 다운받은 후 CD 등의 저장매체로 재복사·이용

18) 저장 일자부터 30일 이내 개인 PC에서 영상을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경찰청 폴리스 캠 운영자 매뉴얼)

19) 매년 시스템 유지비용 예산 소요현황: 2017년 70백만원, 2018년 52백만원, 2019년 52백만원